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3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조승래・이정문・김민기

김회재 · 박찬대 · 이상헌

최종유 • 도종환 • 황운하

장철민 • 박영순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 다 보니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또 다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2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총리와"를 "교육부장관과"로, "국무총리가"를 "교육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을 "교육부장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이 된다"를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 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방 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 제13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행위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
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ㆍ기능)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u>	교육부
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	<u> 장관</u>
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u>국무총리와</u> 학교	② <u>교육부장관과</u>
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	
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국무총리가</u> 지	교육부장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u>o]</u>
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3
중에서 <u>대통령</u> 이 위촉하는 사	<u>교육부장관</u>
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	
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 청장
- ④ (생략)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⑥・⑦ (생 략)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①・② (생 략)<신 설>

<신 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 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방송통신위 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 ④ (현행과 같음)
 - 5 -----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

- 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 해결과정에서 필요한 경 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 ①·② (생 략)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 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 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④ ~ ⑨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말한다. 이하 같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책
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